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August 3, 2022

목차

1. 들어가며
2. 영국과 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법률
3.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시사점

1. 들어가며

2021년 12월,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호주와 체결하였습니다.¹ 이번에 영국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관세 인하와 농업 개방, 서비스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의 사법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²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이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영국과 호주 각국의 법률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 체결된 해적 사이트의 차단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¹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ree-trade-agreement-between-the-united-kingdom-of-great-britain-and-north-ireland-and-australia>

²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란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자들을 의미합니다.

2. 영국과 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법률

현재 영국과 호주는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해적 사이트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과 호주 양국은 해적 사이트로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 복제 확산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개별 업로더나 다운로더 등 일반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영국과 호주는 개별 법률을 통해 해적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인 CDPA(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섹션 97A³를 살펴보면, 영국 사법당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 사이트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 CDPA 섹션 97A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섹션 97A에 근거하여 사법당국이 해적사이트에 대해 차단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⁴ 현재 영국 사법당국은 파일 공유(P2P/Torrent)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 및 모조품 판매 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수백 개의 해적 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⁵

한편 호주도 영국의 지적재산권법(CDPA) 섹션 97A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015년 호주 저작권법에 도입된 섹션 115A⁶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의 제정 이후, 호주 법원은 권리자들의 신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도메인의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⁷

³ UK Copyright Law.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CDPA) 1988, section 97A - Injunctions against service providers (“(1) The High Court (in Scotland, the Court of Session) shall have power to grant an injunction against a service provider, where that se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ge of another person using their service to infringe copyright. (2) In determining whether a se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ge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all matters which appear to i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o be relevant and, amongst other things, shall have regard to – (a) whether a service provider has received a notice through a means of contact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c) of 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SI 2002/2013); and (b) the extent to which any notice includes– (i) th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sender of the notice; (ii) details of the infringement in question. (3) In this section “service provider” has the meaning given to it by regulation 2 of 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⁴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14eecd-2313-4e42-8674-db65e5e3404e> (“The High Court has recently required major UK ISPs to block certain websites which infringed Nintendo’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⁵ https://en.wikipedia.org/wiki/Web_blocking_in_the_United_Kingdom

⁶ Australia, The Copyright Act 1968 (Cth) Section 116A - Injunctions relating to online locations outside Australia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 (1) The owner of a copyright may apply to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to grant an injunction that requires a carriage service provider to take such steps as the Court considers reasonable to disable access to an online location outside Australia that: (a) infringes, or facilitate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and (b) has the primary purpose or the primary effect of infringing, or facilitating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whether or not in Australia). (2) The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ay also request that the injunction require an online search engine provider (other than a provider that is covered by a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8B)) to take such steps as the Court considers reasonable so as not to provide a search result that refers users to the online location.”).

⁷ <https://www.jonesday.com/en/insights/2017/01/federal-court-of-australia-orders-first-site-blocking-injunctions-to-reduce-online-copyright-infringement>

3.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이번 영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중 해적 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rticle 15.89 (Blocking Orders)는 각국의 사법당국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15.89 (Blocking Order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ivil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grant an injunction against an ISP within its territory, ordering the ISP to take action to block access to a specific online location, in cases where:
 - (a) that online location is loc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nd
 - (b) the services of the ISP are used by a third party to infringe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2.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rticle precludes a Party from providing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may grant an injunction to take action to block access to online locations used to infri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ircumstanc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

제15.89조 (차단 명령)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각 당사국의 민사 사법 당국이 각 당사국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ISP에게 특정 온라인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 (a) 해당 온라인 사이트가 해당 당사자의 영토 외부에 위치하고,
 - (b) 제3자가 해당 ISP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토 내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당사국이 제1항에 명시된 것과 다른 상황에서, 각 당사국의 사법 당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온라인 사이트로의 접근 차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두 번째, Article 15.90 (Procedures for Domain Registrars)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 이용되는 도메인을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⁸에서 중단시키기 위해, 각국의 도메인 등록부서로 하여금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15.90 (Procedures for Domain Registrars)

Each Party shall encourage its domain registry to take appropriate, timely, and effective measures to suspend domains used for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on their respective country-code top-level domains. That encouragement may be satisfied by measures including the facilitation of cooperative arrangements between, the relevant domain registry, law enforcement, and industry groups.

제15.90조 (도메인 등록기관에 대한 절차)

각 당사자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도메인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 당사자의 도메인 등록부서가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관련 도메인 등록부서, 법 집행 기관, 및 산업 그룹 간의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장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Article 15.91 (Disclosure of Information)은 저작권 또는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사법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권리를 침해한 가입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15.91 (Disclosure of Information)

A Party may provide, in accordance with its law,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may order an ISP to disclose expeditiously to a right holder information sufficient to identify a subscriber whose account was allegedly used for infringement, where that right holder has filed a legally sufficient claim of trade mark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where that information is being sough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or enforcing those rights.

제 15.91조 (정보의 공개)

일방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권리 보유자가 법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상표권,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를 제기하고 또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침해에 이용되었다고 주장되는 계정의 보유자를 식별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해당 권리 보유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ISP에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⁸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은 국제적으로 나라 또는 특정 지역 그리고 국제 단체 등을 나타내는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에 배당한 고유 부호를 일컬으며, 최상위 도메인으로 취급한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kr,” 영국은 “.uk,” 호주는 “.au”를 사용한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과 호주 각국은 이미 해적 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각국의 기존 법체계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위와 같은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조치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고 나아가 이에 관한 사법 당국의 권한이나 권리를 침해한 가입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위와 같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양국의 저작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호주는 이미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국 호주간 자유무역협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상 앞으로 영국이나 호주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나아가 영국과 호주 이외의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될 자유무역협정에도 참고 사례가 됨으로써 앞으로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제도가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의 IP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이후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웹사이트의 IP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⁹

나아가, 작년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¹⁰에는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는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권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가장 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해적 사이트의 접속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노력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이번 영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해적 사이트 차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위 기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하는 ‘해외저작권동향’(2022.6.22.자)에도 소개되었습니다.

⁹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7386&jomunNo=104&jomunGajiNo=0>

¹⁰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